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0호
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80호('23.08.31.)로 고시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서울특별시

□ 정정내용

1.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: 오류사항 정정

[정정전]

가. 대상지: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지역(총 3개소)

나. 위치 및 면적 : 정정없음

연번	자치구	위 치	면 적(㎡)	권리산정기준일	비 고
1	성동구	송정동 97-3 일원	31,165	' 23. 8. 31.	
2	중랑구	망우본동 354-2 일원	66,389	' 23. 8. 31.	
3	중랑구	중화2동 329-38 일원	99,931	' 23. 8. 31.	
4	서초구	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	65,070	' 23. 8. 31.	
5	서초구	서초구 양재동 382 일원	74,515	' 23. 8. 31.	

[정정후]

가. 대상지: ' 23년 2차 수시공모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역(총5개소)

나. 위치 및 면적 : 정정없음

2. 권리산정기준일: 2023. 8. 31. : 정정없음

3. 지정 사유 : 정정없음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: 정정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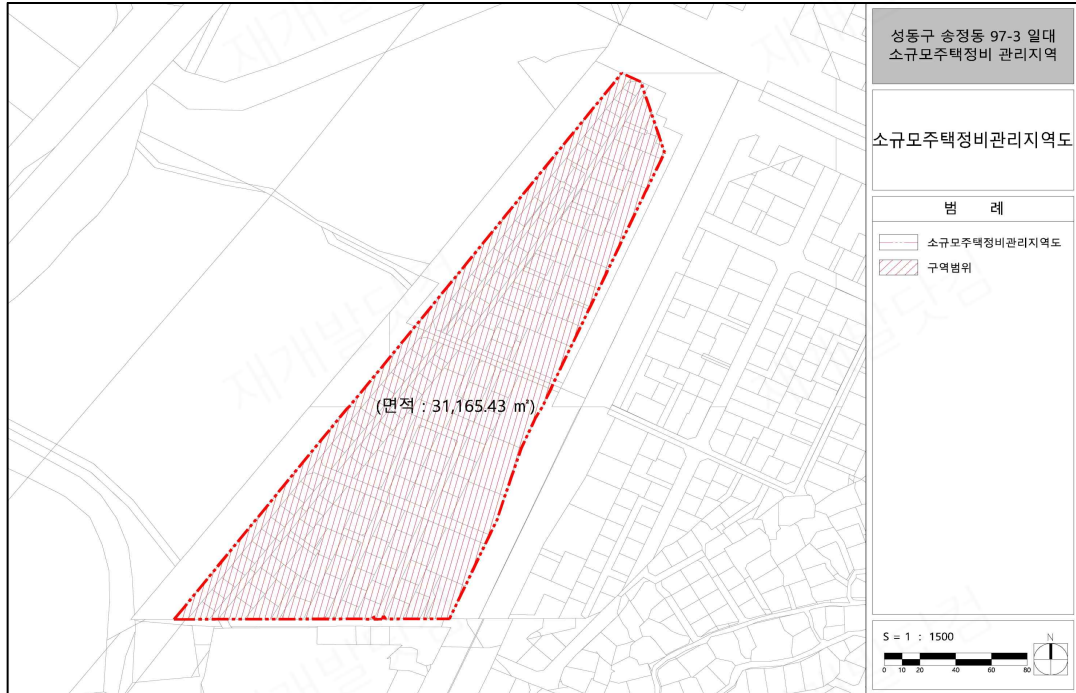
5. 관계도면 : 정정없음

6. 안내사항 : 정정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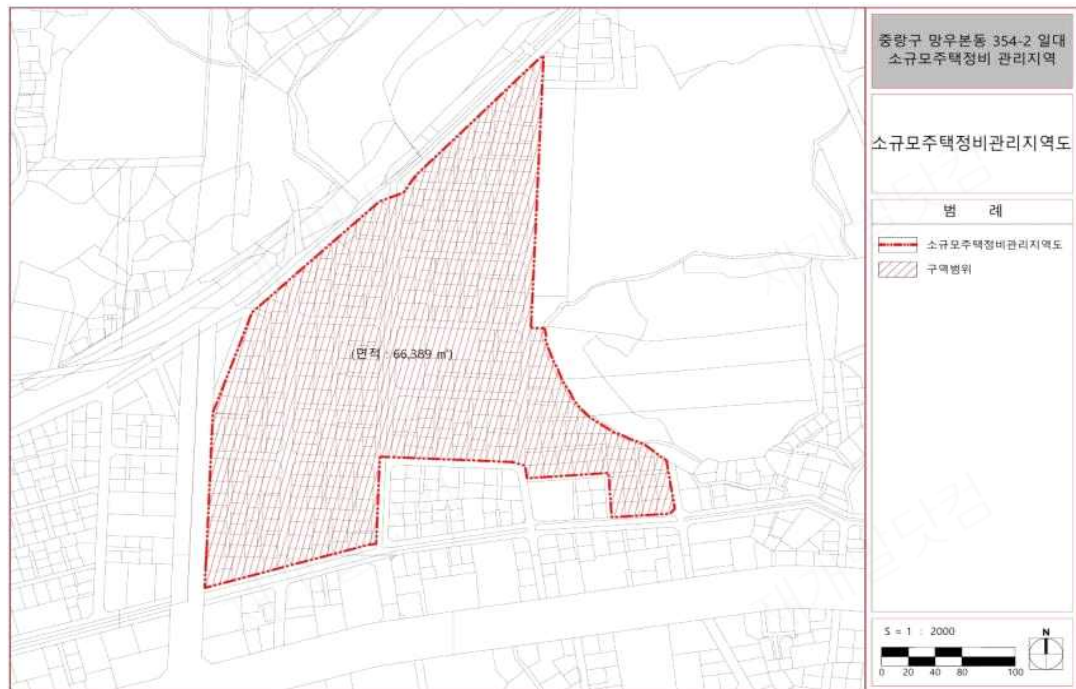
- ※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내 모아주택(소규모주택정비사업) 사업추진 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,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
- 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※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,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

■ 관계도면 : 정정없음

○ 성동구 송정동 97-3 일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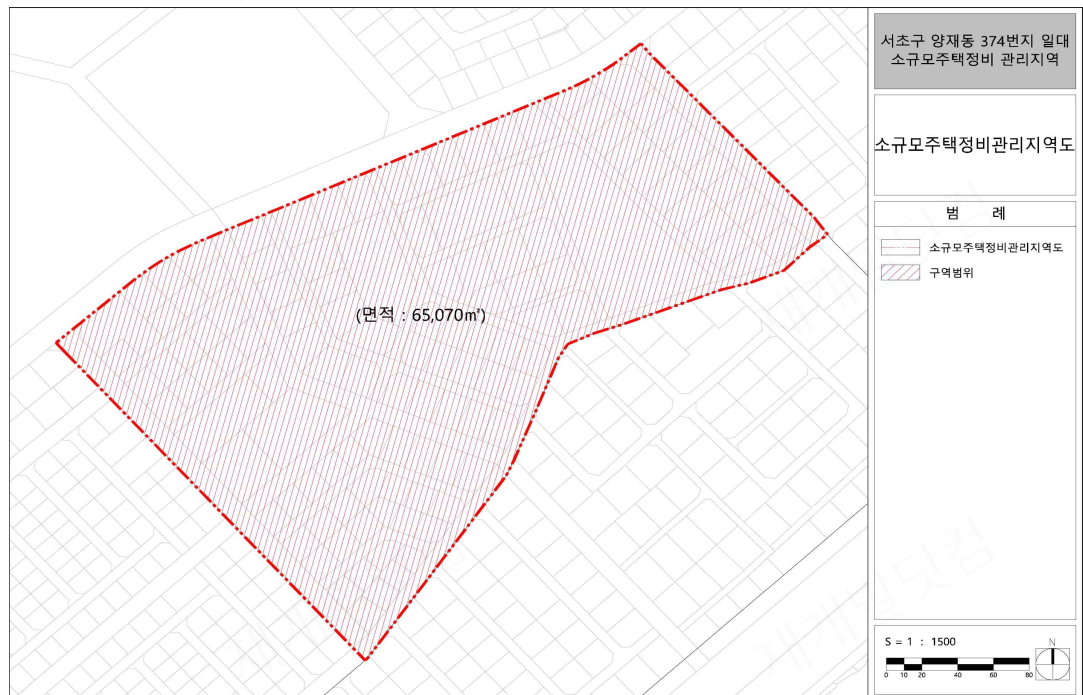
○ 중랑구 망우본동 354-2 일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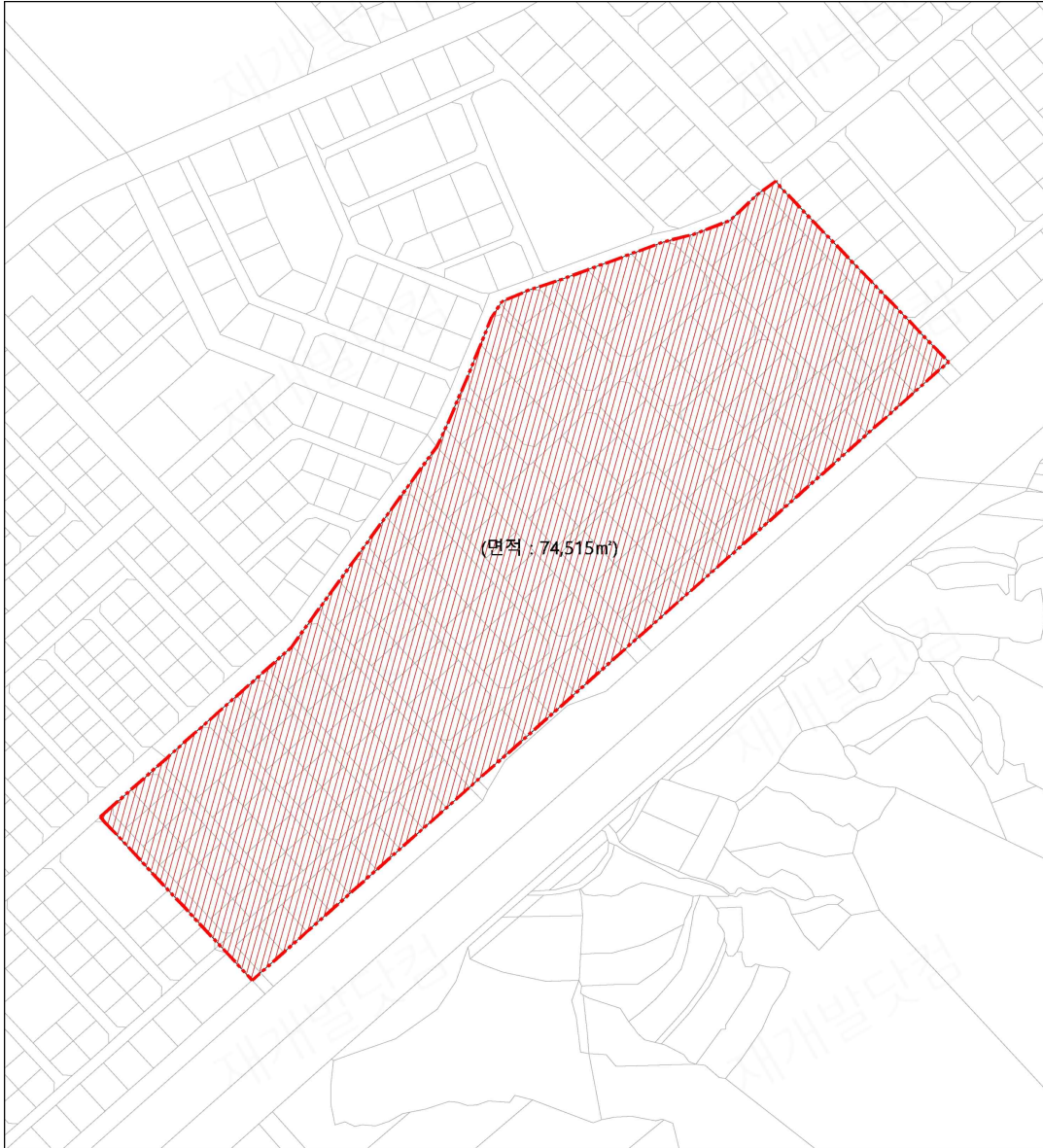
○ 중랑구 중화2동 329-38 일원



○ 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



○ 서초구 양재동 382 일원



서초구 양재2동 382번지 일대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
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도

S = 1 : 2000



범 례

-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도
-  구역범위